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3. 12. 26
[규칙 제237호]

전부개정 2019. 5. 31 규칙 제35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386호

일부개정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일부개정 2024. 7. 12 규칙 제4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 나. 단체
 -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천문대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천문대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부칙(2019. 5. 31 규칙 제35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0 규칙 제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2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7.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단위: 원, 명)

구 분		일 반	아동 및 청소년	군인 및 경찰	유 아	영 아
천 문 대	개 인	5,000	4,000	4,000	1,000	무료
	단체 및 외국인	4,000	3,000	3,000	500	
	VR체험	2,000				체험불가
가상 증강 현실 종합 전시 체험장	VR룸	7,000			체험불가	체험불가
	모션 라이더	3,000			체험불가	체험불가
	스크린 사격	3,000			체험불가	체험불가
	가상 스포츠	2,000			체험불가	체험불가

※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별표 2]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천문대 강 당	4시간	80,000	
	초과시간당	15,000	

[별표 3] <개정 2020. 7.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원, 명)

프로그램	기 준	이용료	비 고
가족캠프	1명	3,000	• 숙박비, 식사비, 관람료 별도
청소년 천체캠프	1명	14,000	• 숙박비, 식사비 별도 • 천체강의 및 만들기 • 가상증강현실체험 등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	1명	12,000	1시간

※ 청소년 천체캠프 및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는 이용객 20명 이상부터 운영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2>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민간위탁(연장) 신청서

신청자(단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산	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수탁 시설명	(m ²)			
수탁운영조건	위·수탁 계약서에 따름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증 평 군 수 귀 하				
첨 부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위·수탁계약서

증평군민에게 천문우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운영 및 관리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위하여 위탁자인 증평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를 “을”로 하여(이하 같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및 사용료) 위 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하고, 위탁(시설)사용료는 _____ 원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시설) 위탁대상 시설은 붙임 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을”의 관리책임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실적보고) “을”은 연 1회로 천문대 운영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이용료의 징수) “을”은 천문대 시설 이용자 등에게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8조(감독) “갑”은 소속 공무원(좌구산 천문대 관리 증평군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을 말함)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30일전에 민간위탁 연장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위탁기간의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 소유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상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위·수탁 재산 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증 평 군 수 (인)
수탁자(을) (인)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운영일지

문서번호	
보존기간	
보고일자	
공개여부	

담당자	팀장	소장	결 재

. . . (요일)			날씨 :		근무자								
좌 구 산 천 문 대	관람객 현황					휴양랜드 연계 현황							
	구 분		일 계		누 계		구 분		일 계		누 계		
	일반관람		명		명		숙박동 이용객		동 명		동 명		
	가족캠프		명		명		숙박객 관람 비율				%		
	천체캠프		명		명		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						
	VR 체험		명		명		구 분		일 계		누 계		
	관측행사		명		명		천문대 야외데크		명		명		
	총관람객		0 명		0 명		태교숲 ~ 정상 등산로		명		명		
	입금 내역					합 계		0 명		0 명			
	구 분		일 계		누 계		기 타 사 항						
	카드결제 정산금		원		원								
	관람료	현금		원		원							
		카드		원		원							
	합 계		0 원		0 원								
	지출 내역												
	구 분		일 계		누 계								
	군세입		원		원								
	통장잔액				원								